

의안번호	2204918
의 퇴 인	김영환 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계번호	24E4544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2027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.0%에서 1.3%로 인상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5,425억원, 2029년 7,730억원 등 2027~2029년 총 2조 599억원(연평균 4,12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7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1조 5,388억원, 지방소비세는 총 5,212억원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누적	연평균
전체 부가가치세	-	-	-5,425	-7,445	-7,730	-20,599	-4,120
- 국세(74.7%)	-	-	-4,052	-5,561	-5,774	-15,388	-3,078
- 지방소비세(25.3%)	-	-	-1,373	-1,884	-1,956	-5,212	-1,04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	비고
1	안 제46조(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) 제1항제3호	○ 2027년 이후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인상				-
				2026.12.31. 이전	2027.1.1. 이후	
		현행	공제율	1.3%	1.0%	
			공제한도	1,000만원	500만원	
		개정안	공제율	상 동	1.3%	
			공제한도	상 동	1,000만원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6조(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) 제1항제3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세수효과는 동 제도의 감면액 규모를 추정하고, 여기에 개정안에 따른 2027년 이후의 공제율 변화를 반영해 추계
 -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감면액을 기준으로, 추계기간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(NABO, 2024.10.)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제함
 - 추계기간 동안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감면액(추정)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아, 실질적으로는 추계 결과에 공제한도 인상의 영향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음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현행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적용 시 2027년 1인당 평균 공제액은 165만원(이하, 귀속 기준), 전체 공제액 규모는 2조 4,111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
 -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7년부터 공제율은 1.3%에서 1.0%, 공제한도는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될 예정
 - 공제액 규모는 매년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제

- NABO¹⁾의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전망(%): ('24) 3.6 ('25) 4.0 ('26) 4.0
('27) 4.0 ('28) 3.9 ('29) 3.8

○ 공제대상 인원은 2023년 기준(146만명)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현행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인당 평균 및 전체 공제액(추정치): 지방소비세 포함, 귀속 기준
(단위: 만원, 억원)

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1인당 공제액	184	191	199	206	165	172	178
전체 공제액(A) ¹⁾	26,897	27,865	28,980	30,139	24,111	25,051	26,003

주: 1) 전체 공제액은 2023년 공제대상 인원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여 추정

1. 2023년은 조세지출 실적이며, 2024~2029년은 매년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을 반영해 추정한 금액

2. 현행 제도는 2026년까지 공제율 1.3% 및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고, 2027년부터 공제율 1.0% 및 공제한도 500만원을 적용할 예정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개정안에 따라 2027년 이후 공제율을 1.0%에서 1.3%로 인상할 경우
2027년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15만원, 전체 공제액 규모는 3조 1,344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

[표 3] 개정안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인당 평균 및 전체 공제액(추정치): 지방소비세 포함, 귀속 기준
(단위: 만원, 억원)

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1인당 공제액	184	191	199	206	215	223	232
전체 공제액(B) ¹⁾	26,897	27,865	28,980	30,139	31,344	32,567	33,804

주: 1) 전체 공제액은 2023년 공제대상 인원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여 추정

1. 2023년은 조세지출 실적이며, 2024~2029년은 매년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을 반영해 추정한 금액

2. 개정안은 2027년 이후 공제율 1.3% 및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내용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개정안에 따라 2027년 이후 공제율을 1.0%에서 1.3%로 인상할 경우
전체 공제액은 2027년의 경우 2조 4,111억원에서 3조 1,344억원으로
7,23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[표 4] 개정안 적용 시 공제액 규모 변화: 지방소비세 포함, 귀속 기준

(단위: 억원)

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현행 공제액(A)	28,980	30,139	24,111	25,051	26,003
개정안 공제액(B)	28,980	30,139	31,344	32,567	33,804
차이(B-A)	-	-	7,233	7,515	7,801

-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2027년부터 1.0%에서 1.3%로 인상할 경우 현행 대비 부가가치세수(징수 기준)는 2027년 5,425억원 등 2027~2029년 총 2조 599억원(연평균 4,12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부가가치세의 징수 시점을 고려해 귀속 기준 자료로 추정한 연도별 세수효과를 조정함
 -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,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/4 징수, 차년도에 1/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조정
 - 2027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1조 5,388억원, 지방소비세는 총 5,212억원 감소

[표 5] 개정안 적용 시 공제액 규모 변화: 징수 기준

(단위: 억원)

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누적	연평균
전체 부가가치세	-	-	-5,425	-7,445	-7,730	-20,599	-4,120
- 국세(74.7%)	-	-	-4,052	-5,561	-5,774	-15,388	-3,078
- 지방소비세(25.3%)	-	-	-1,373	-1,884	-1,956	-5,212	-1,042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